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4. 9. 25.

社會建設委員會專門委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

1. 경 과

의안 제12호로 2014년 9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도로법」의 전부개정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재원 조성에 따른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착·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 조성 근거 법령인 「도로법」제76조를 제91조로 변경(안 제4조제1호)
-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신설(안 제6조제5항)

다. 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안 제6조의5)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도로법」제91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징수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O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금 재원의 조성 근거인 「도로법」제76조를 제91조로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와 안건 심의 시 이해관계 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이 전부개정(2014. 1. 14, 시행 2014. 7. 15)되고 「서울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가 2014. 7. 17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변경하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건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2012.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한 위원회의 공정성과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서울시 조례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